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. 3. 14 선고 2018가단491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(변경 전: 주식회사 C)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3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3. 2. 4. 접수 제32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9. 1. 4.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)

판사김용현

별지